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6833

발의연월일: 2022. 8. 11.

발 의 자:양경숙·강득구·김두관

이동주 · 정일영 · 정성호

김영배 • 이병훈 • 김주영

위성곤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부의 활성화를 위해서 내국법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금품을 기증하거나 교육기관·병원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 등의 목적으로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소득금액 계산 시 일정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기부금 대상에는 사립학교, 비영리 교육재단(국립·공립·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으로 한정), 산학협력단 등이 포함하고 있으나, 비영리 교육재단과 유사한 성격의 한국장학재단은 제외되어 있음.

한국장학재단은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인재육성 사업 운영을 운영 하고 있는 준정부 공공기관이며,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부 금 조성 사업을 통해 국·공립·사립학교의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대상의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를 지출하는 공익성이 현 저히 높은 기관임.

이에 기부금 사업 활성화를 위해 손금산입 특례 기부금 대상에 한 국장학재단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제1호사목 신설).

법률 제 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1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에 지출하는 기부금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제1호사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②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	
라 이월된 기부금(제3항제1호	
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중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2	
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	
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	
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	
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1
해당하는 기부금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u><신 설></u>	사.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
	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
	국장학재단에 지출하는 기
	<u> 부</u> 급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